

제 호

출입통지서

- 출입목적 :
- 출입장소 :
- 출입자 소속기관 :
- 출입기간 : . . . 부터 . . . 까지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빈집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및 그 대지에 출입할 계획임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